

울산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9가단125552(본소), 2021가단113057(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101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060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0. 16.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0603호로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199,99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C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7.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9년 제1414호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37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양도(점유개정)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7. 23. 항소기각 판결(울산지방법원 2019나1352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의 주소지가 경주시 F에서 양산시 G로 이전됨에 따라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사건도 울산지방법원 H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1)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5. 9. 8.부터 2019. 4. 23.까지 C에 대여한 3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C으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유체동산은 취소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과 모순판결의 회피 및 소송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심리, 판단되는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나. 반소 청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등 반환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담보물건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담보물건을 수익자인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 행위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5년 당기순손실이 160,849,914원, 2016년 당기순손실이 190,032,048원으로 2016년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

별 지 목 록

1.	소형코터기	1식
2.	샌딩기	4식
3.	튐샌딩기	1식
4.	솔루션브라스트	1식
5.	블밀	1식
6.	경화로	4식

- 이 상 -

별지2 기계설비 목록

기계설비목록					
NO.	품목	규격	구입년월	제조사	금액
1	자동스프레이코팅기		2016.07		50,000,000
2	임스프레이기				10,000,000
3	원통회전형연염기		2014.11.20		4,500,000
4	수동연염기		2015.03.07		6,500,000
5	메이프론타입선염기1		2015.05		25,000,000
6	메이프론타입선염기2		2015.11		34,000,000
7	직접식선염기		2016.09		30,000,000
8	롤타입선염기		2016.01.06		39,000,000
9	롤타입선염기 탕크 노출 업그레이드				3,500,000
10	소형 건조로		2014.11.28		5,000,000
11	중형 건조로		2015.02.05		6,000,000
12	대형 건조로		2014.11.27		4,000,000
13	대형 건조로		2015.10.20		10,000,000
14	다공도판스		2015.12.23		500,000
15	4조형 초음파세척기		2014.12		6,000,000
16	5조형 초음파세척기		2015.11		20,000,000
17	미니 초음파 세척기		2014.11		400,000
18	공프레서 50마력 일반형				35,000,000
19	공프레서 50마력 인버터형		2015.12		20,000,000
20	공프레서 인버터형 에어드라이어				5,000,000
21	공프레서 인버터형 에어쿨러				
22	공프레서 20마력 원통형				
23	공프레서 원통형 에어드라이어				
24	공프레서 원통형 에어쿨러				
25	공프레서 실험실용		2015.01		500,000
26	에어 리시보 탱크 1				3,000,000
27	에어 리시보 탱크 2				
28	중류수 제조기				300,000
29	검수분무기				10,000,000

NO.	품목	규격	구입년월	제조사	금액
30	교반기(불꽃기) 1				4,400,000
31	교반기(불꽃기) 2				
32	교반기(불꽃기) 3 자동스프레이기용				
33	도약두께측정기 1				881,000
34	도약두께측정기 2		2015.12.16		
35	온도측정기				
36	pH 농도측정기 1		2015.12.16		
37	pH 농도측정기 2				219,000
38	현미경 카메라				
39	열도계				
40	전조용 리터기 스탠드형 8개		2015.11		1,800,000
41	열풍히터				500,000
42	SUS 수조 1	250*3400	2015.11.04		1,470,000
43	SUS 수조 2	1580*1880	2015.11.04		
44	SUS 수조 3	300*3000	2015.07.08		812,000
45	레이플리프트				430,000
46	원격외선 스탠드 3개		2016.1		300,000
47	레이플 4개				
48	도량부스 대자 25개				
49	집진정소기		2015.09.20		600,000
50	물트 거치대 52개				
51	사무용 책상		2015.12		
52	사무용 의자		2015.12		
53	회의용 원탁		2014.1		
54	회의용 테이블		2014.1		
55	회의용 의자				
56	침류티 6대				3,660,000
57	서랍장				
58	책장				
59	승용차				4,000,000

NO.	품목	금액	구입년월	제조사	금액
60	열풍건조로				15,600,000
61	전동지게차		2017.09		3,500,000
62	고압세척기		2015.12		290,000
63	컨베이어 3EA		2015.11		6,200,000
64	카스 차울(무게, 지게발)				
65	컨테이너 4×8		2015.09		
66	컨테이너 3×6		2015.10		
67	그릴 300EA				3,000,000
68	개인용 작업복		2015.11		800,000
합 계					372,862,000

